

◆◆◆ 미국 ◆◆◆

## 연방법무부, 개봉영화관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연**방법무부는 Regal Cinemas Inc.(이하 'Regal')과 Consolidated Theatres Holding GP(이하 'Consolidated') 간의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3곳의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화관의 일부를 처분해야만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기업결합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에 신고된 내용대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진다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Charlotte), 롤리(Raleigh), 애슈빌(Asheville) 시에 있는 영화관들 간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어 관람료가 인상되고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워싱턴 D. C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독점금지국은 화해 안을 제시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연방법무부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쟁상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점금지국장인 Thomas O. Barnett는 "자산 매각으로 샬럿, 롤리, 애슈빌 시의 영화 관람객들이 경쟁상의 편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자산 매각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시장에서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독점금지국이 법원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Regal과

Consolidated가 소유하고 있는 영화관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대도시 세 곳에서 현재 경쟁 중에 있거나 향후 경쟁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산매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에 제출한 화해안에 의하면 Regal과 Consolidated는 샬럿에 있는 12곳, 롤리에 있는 16곳, 롤리 근교에 있는 10곳, 그리고 애슈빌에 있는 14곳에 대해 매각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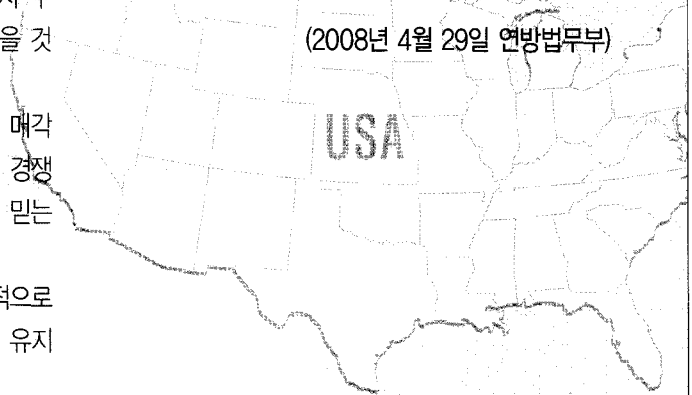
Regal은 테네시 주 녹스빌에 본사를 두고 39개 주에 540여 개의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6,400개가 넘는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다.

2007년에는 약 2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Consolidated는 조지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및 버지니아 주에서 28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400개 정도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에는 1억 4,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2008년 4월 29일 연방법무부)



●●● 미국 ●●●

## 일본항공, 가격고정혐의 인정, 벌금 납부키로



**J**apan Airlines International Co. Ltd.(이하 'JAL')은 국제화물운송료를 고정하는 담합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1억1,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연방법무부가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문건에 의하면, JAL은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담합에 참여해 2000년 4월 1일경부터 2006년 2월까지 미국 및 기타 지역으로 수출입 되는 국제화물 운임요율을 고정하여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에 JAL은 미국과 일본노선에서 화물운송을 하는 제1위의 사업자였고, 이 기간에서의 화물운송을 통해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현재 JAL은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연방법무부의 향후 조사에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독점금지국장은 "가격고정 담합은 미국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JAL이 이 담합에 참여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향후 지속되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한 4번째 사업자"라고 덧붙였다.

JAL은 다른 카르텔 참가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합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카르텔 회합의 참여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요율에 대해 정보 교환
- 카르텔 회합에서 결정된 (對)미국 수출입에 있어서 화물운송요율 등의
- 카르텔 회합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결정된 화물 운송요율 부과
- 카르텔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회합에 참가

한편 2007년 8월 23일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은 유죄를 인정하고 형사벌로서 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노선에서 화물운송요율을 고정하고 승객운송요율을 고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가했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대한항공(Korean Air)도 역시 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국제화물운송을 하면서 경쟁사들과 요율에 관한 담합을 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특정 운임에 대해 가격을 고정하기로 경쟁사들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그리고 2008년 1월 14일에는 퀸타스항공(Qantas Airways)이 유죄를 인정하고 6,100만 달러의 벌금 납부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화물운송요율을 고정하기로 한 담합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JAL은 가격 고정으로 인한 셔먼법 위반으로 제소되었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최대 금액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위법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손해의 2배까지로 증액될 수 있다.

벌금액이 1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의 형사집행부와 FBI는 항공운송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8년 4월 16일 연방법무부)

●●● EU ●●●

## EU위원회, 오라클의 BEA 인수 및 3M의 Aearo 인수 승인



**E**U위원회는 EU 기업결합규칙에 따라 신고된 미들웨어 제공사업자인 미국의 BEA Systems(이하 'BEA')를 같은 미국회사인 Oracle Corporation(이하 'Oracle: 오라클')이 인수하는 것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이 EU 역내 전체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유효 경쟁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라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미들웨어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기업용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U위원회는 이번에 신고 된 기업결합이 전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부문과 응용 서버, 포털, 응용 프로그램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용 서비스 버스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그 세부 영역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합해주는 소프트웨어 등에 있어서 잠재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각 부분별 검토를 통해 EU위원회는 결합 기업들 간의 행위들이 수평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경쟁상의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라클과 BEA가 결합하더라도 전체 미들웨어 시장과 그 하위 시장들에서는 IBM, Sun, Microsoft나 SAP 등의 여러 경쟁사들이 있으므로 결합 기업은 이들 경쟁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은 충분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U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들웨어 시장이 매우 복잡해지거나 사업자들의 다양한 할인제도로 인해 가격이 투명성이 저하될 위험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 29일 EU위원회)

**E**U위원회는 한편, EU 기업결합규칙에 따라 미국회사인 3M이 미국계 안전장비 제조사업자인 Aearo의 인수를 신고해 오며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EU 역내에서 경쟁상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M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안전이나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Aearo는 눈, 안면, 청력 보호 장비 등의 개인용 보호 장비를 전문 생산하는 업체이다.

EU위원회는 이번에 신고 된 기업결합이 개인용 보호 장비, 특히 청력 보호 장비시장에서 미치는 경쟁상의 효과에 대해 검토했다.

청력 보호 장비시장에서 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가장 많이 중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플러그(Earplugs)나 이어머프(Earmuffs)와 같은 장비들은 근로자들이 산업용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EU위원회의 조사 결과, 결합 기업들은 다수의 경쟁자들과 유효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귀마개, 등의 보호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머리, 눈, 얼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시장에서는 결합 기업들 간에 사업 활동이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을 경쟁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

(2008. 3. 28. EU위원회)

••• EU •••

## EU법원, DT에 대한 EU위원회의 이윤압착 결정, “문제없다”



**E**U위원회는 지난 2003년 도이치텔레콤(이하 'DT')이 독일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에서 1,26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자 이를 반겼다.

5년이 넘도록 DT는 유선가입자망에서 불공정한 접속료를 받아왔는데, 이는 DT의 경쟁사업자들이 DT와 제대로 경쟁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독일 소비자들은 5년이 넘도록 경쟁이 주는 이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U법원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망(網)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윤압착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DT 측의 모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U위원회는 지난 1998년 초부터 2001년 말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EU위원회 결정이 발표되기까지 DT가 이윤압착을 중지하거나 감축하면서, 독일 통신규제청(RegTP)이 부과한 요금을 준수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EU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또한 EU법원은 DT가 책정한 요금을 통신·우편규제청에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경쟁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사업 활동을 함에 따라 DT는 요금이 EU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이를 조정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EU법원은 EU위원회가 이윤압착이라는 논거로 제시한 방법론을 지지하기까지 했다. EU위원회는 DT의 가격정책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했었다. 또한 EU위원회는 DT의 모든 소매 접속 서비스 요금(아날로그,

ISDN 및 ADSL)의 가중평균과 비교해서 도매 접속요금은 이윤압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U법원은 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2003년을 상가하면서 당시 독일에서는 DT의 유선 네트워크 이외에 소매 접속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와 경쟁할 만한 다른 인프라 망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DT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잠재적 경쟁자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소매 접속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DT의 경쟁자들은 매우 적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이는 곧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남용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EU위원회는 지난 2003년 5월 21일에 DT가 신규 시장참여자들에게 가입자망에 대해 DT 가입자들이 유선 가입 시 지불하는 요금보다도 높은 도매 접속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시장참여자들은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통신 서비스 공급에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되었다. EU위원회는 독일 통신시장의 많은 신규 진입자들의 진정에 따라 조처에 착수했었다.

1998년 이래 DT는 자신의 가입자망을 경쟁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망 세분화 작업은 매우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 당시 9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DT는 광대역과 협대역망의 소매 접속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었다.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하고자 했으나, 이들 중 의미 있을 정도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사업자는 아무도 없었다. DT가 가입자망 접속에 있어서 비싼 접속료를 경쟁자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이었다. 그 요금이 일반 소비자들보다도 더 비쌌던 것이다.

(2008년 4월 10일 EU위원회)

●●●독 일●●●

## 연방카르텔청, 식품할인점간 기업결합계획 경고 및 케이블방송사간 기업결합 승인



**E**DEKA와 Tengelmann은 각각 'Netto'와 'Plus'라는 체인점을 통해 독일 내 식품할인점사업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조인트벤처의 형태로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방카르텔청은 이러한 기업결합은 EDEKA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해 줄 것으로 보고, 이러한 기업결합 계획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EDEKA는 경쟁사들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적·국가적 시장도 확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EDEKA와 Tengelmann은 슈퍼마켓사업에서의 구매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은 독일 식료품 소매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 시장은 급속하게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EDEKA는 이 중에서도 2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선도 기업이다. 연방카르텔청은 독일의 식료품 소매부문을 지역별로 나누고 약 100개의 지역시장들 중에서 중요한 시장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기업결합 계획이 이뤄지면 시장지배적인 지위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EDEKA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시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을 승인하게 되면 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조달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게 된다. 조달시장에서의 EDEKA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일반 판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7일 연방카르텔청)

**2**008년 4월 3일 연방카르텔청은 Kabel Deutschland GmbH(이하 'KDG')가 Orion Cable GmbH(이하 'Orion')의 7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함부르크,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를 포함하여 총 8개 지역에서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결합하게 되면 약 120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기업결합이 KDG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사건을 맡은 심결부에서는 최근 널리 확대되고 있는 IPTV에 대해 KDG가 디지털방송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기업결합 당사자들은 기업결합을 통해 광대역 시장 및 협대역시장에서 경쟁조건이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방송 이외에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DSL을 통한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는 여전히 성장단계에 있다.

이번 기업결합 결과로 KDG는 광대역 케이블을 통해 80만 가구에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새로운 경쟁상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도이치텔레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설비기반 경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이치텔레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4월 4일 연방카르텔청)

●●● 일본 ●●●

## 2007년도 하청법 운용 상황 및 기업간 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요 발표



**공**정취인위원회는 5월 14일에 '2007년도 하청법의 운용 상황 및 기업 간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먼저 하청법의 운용 상황을 보면, 하청법 위반행위에 대한 권고와 관련해 2007년에 권고를 실시한 건수는 13건으로, 2004년 4월 개정된 하청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권고를 실시한 해로 기록됐다.

13건은 모두 하청대금 감액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역무위탁 등에 있어서의 위반 건수가 8개로 가장 많은 위반 형태로 드러났다.

또한 하청대금 감액분의 반환 및 하청대금의 지불 지연이자의 지불 상황과 관련해 권고 또는 경고에 의해 하청사업자 3,736명에 대해 총 10억8,804만 엔의 감액 분을 반환하도록 지도했다.

감액분을 반환 받은 하청 사업자수와 반환 총액도 개정 하청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하청법 특별조사 결과에 있어서 2004년 4월에 시행된 개정 하청법에 근거해 새롭게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도로화물운송과 관련되는 역무 제공, 방송 프로그램·영상 제작과 관련된 정보 성과물의 작성 및 금형 제조와 관련되는 각 위탁거래를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해 4건의 권고와 250건의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하청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물론,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취위는 각종 시책을 실시하는 등 위반행위의 미연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면조사이다.

공취위는 원사업자 및 하청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서면조사를 통해 위반행위 발견에 노력하던 중, 2007년도 서면조사 실시를 맞아 조사표를 재검토했다.

또한 매년 11월을 '하청거래 적정화 추진의 달'로 정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하청법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법의 보급과 개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취위는 기업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자외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 소매업 고시의 보급·계발을 위해 지난해 사업자단체 등이 개최하는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강사를 파견(21회)하기도 했다. 공취위는 또한 하주와 물류사업자와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하주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 및 물류 분야에 있어서의 하청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물류사업분야 하청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물류조사TF를 설치하기도 했다.

(2008년 5월 14일 공정취인위원회)



◆◆◆ 일본 ◆◆◆

## 공취위, (주)소고와 (주)세이부백화점에 배제명령 조치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소고 및 주식회사 세이부백화점의 2개사(이하 '2개사')가 판매하는 '러시아 후레쉬 캐비아'라고 칭한 병조림의 캐비아를 여러 가지들 섞어 담은 포장 상품(이하 병조림 캐비아 세트)과 관련해서 그 표시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공취위는 조사 결과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제1호(우량인인) 및 동항 제3호(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드러나 2개사에 대해 배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사실을 살펴보면 2개사는 2007년 11월 무렵부터 같은 해 12월 무렵까지 연말선물용 상품으로 병조림 캐비아 세트를 판매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무렵부터 같은 해 12월 무렵 사이에 일반소비자에 배포한 카탈로그, 자사 점포에 설치한 사진 패널, 주문 카드, 그리고 2개사가 인터넷상에 개설한 웹사이트에 '러시아 후레쉬 캐비아'라고 기재, 마치 해당 상품의 캐비아가 러시아 연방산인 신선한 캐비아처럼 보이게 표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제 저온살균 캐비아였던 것이다.

캐비아는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 저온살균 처리한 저온살균 캐비아와 저온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캐비아(후레쉬 캐비아)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 둘은 신선도, 풍미, 먹을 때의 느낌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레쉬 캐비아가 저온살균 캐비아보다 양질인 것으로 여겨져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공취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제명령을 내렸다.

첫째, 해당 상품 원산국에 대해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라는 취지와 해당 상품 내용에 대해 일반소비자가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고 우량하다고 보인다는 취지를 공시할 것.

둘째,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셋째, 향후 이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것.

(2008년 5월 13일 공정취인위원회)

